

제2914호
2022. 4. 6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
전화: 3396-4951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고 시

선	기관 의 장
람	

구 보

- 고 시
 - 제2022-29호 : 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2
 - 제2022-30호 :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6

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63호(2005.09.01)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2호(2014.09.04)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2.03.03)를 통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- 결정 취지
 -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지정된 토지 북창동 17-8, 17-5, 17-3번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 변경 및 공동개발 지정 해제하는 사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함
-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조서(경미한변경)
 -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기정) 조서

구 분	가구 번호	획지 번호 (기결정)	공동개발 면적(㎡)	위 치		필지면적 (㎡)	비 고	획지 (공동개발) 계획		기공동 건축	동일 소유
이 면 부	10	33		북창동	17-3	233.0					
		35	132.2	북창동	17-5	63.1	과소필지	공동 개발 지정	공동 개발 권장	○	○
				북창동	17-8	69.1	과소필지				
			181.8	북창동	17-6	110.4		공동 개발 지정			
				북창동	17-9	71.4	과소필지				

○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가구번호	획지번호 (기결정)	공동개발면적(㎡)	위치	필지면적(㎡)	비고	획지 (공동개발) 계획	기공동 건축	동일 소유
이면부	10	33	302.1	북창동 17-3	233	-	공동개발 지정		○
				북창동 17-8	69.1	과소필지			
	35	63.1	181.8	북창동 17-5	63.1	과소필지	-	공동개발권장 (적정개발규모 유도)	○
				북창동 17-6	110.4	주변 과소필지	공동개발 지정		
				북창동 17-9	71.4	과소필지	공동개발 지정		

나. 변경사유서

가구번호	번호	대상지번	계획내용	계획사유
10	33	• 북창동 17-3, 17-8	공동개발 지정	• 북창동 17-3, 17-8 동일소유자를 고려
	35	• 북창동 17-5	-	• 과소필지, 맹지, 세장형 고려
		• 북창동 17-6	공동개발 지정	
		• 북창동 17-9	공동개발 권장 (적정개발 규모유도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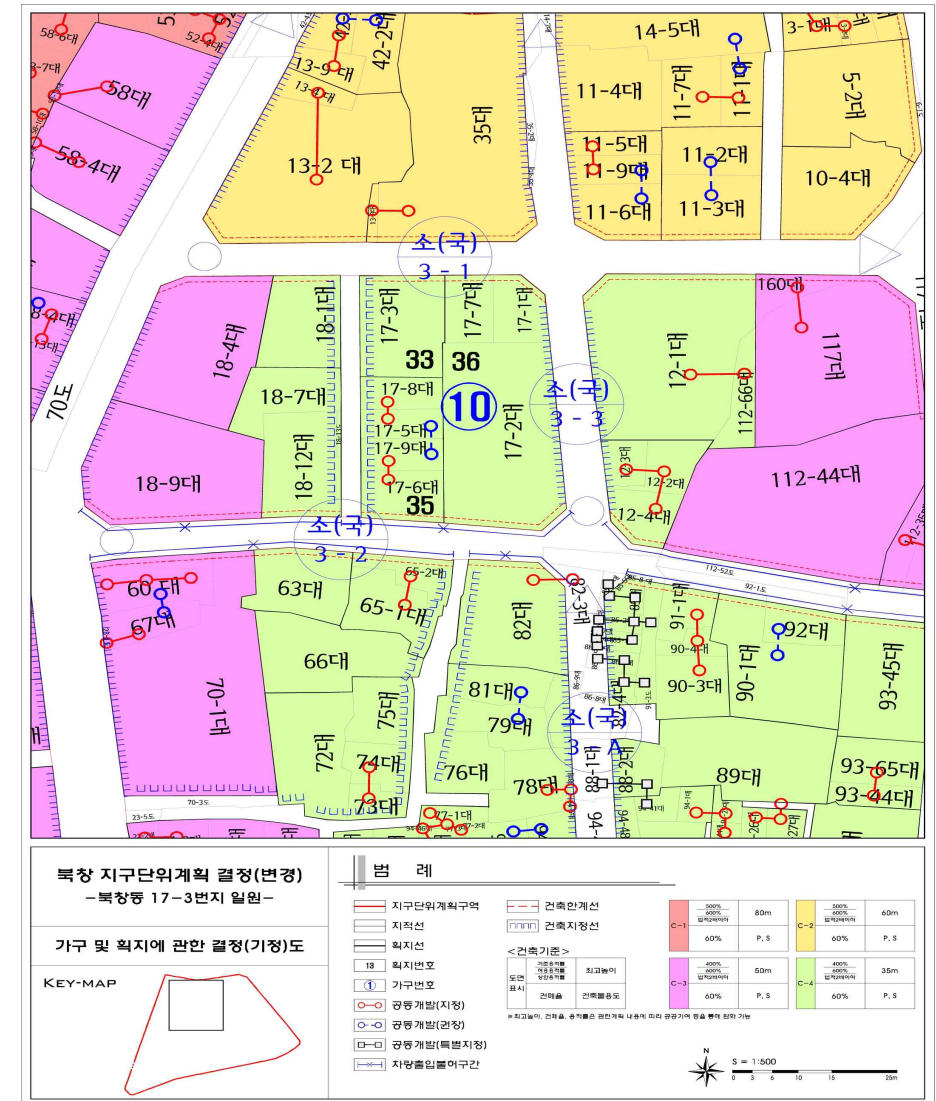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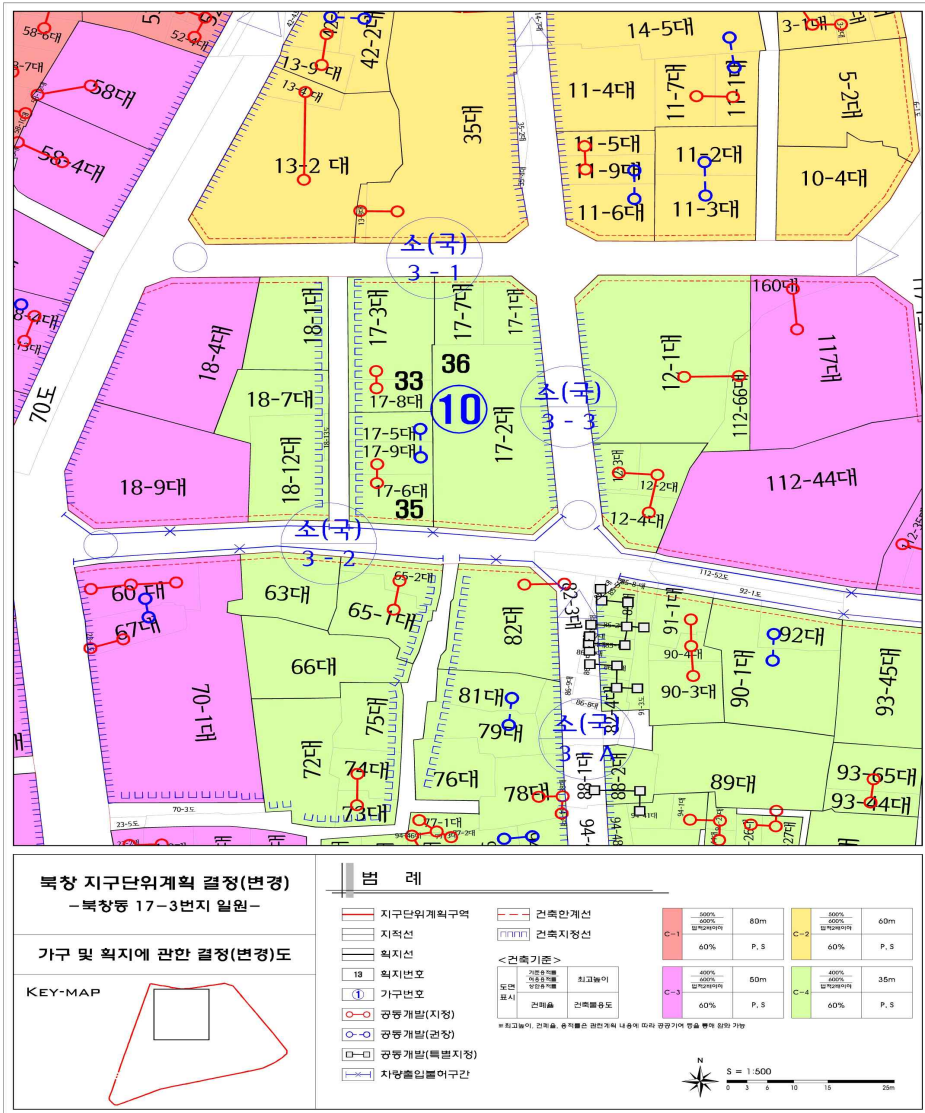
4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86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>

○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기정)도



○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30호

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06.)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86호(2020.11.26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-22호(2021.03.0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-80호(2021.06.16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을지로3가 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-10번지 일대
 - 면 적 : 4,993.0㎡ (대지 4,156.4㎡, 정비기반시설 836.6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(주)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김정선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16층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2. 4. 6.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층)	높이 (m)	용 도
4,156.4	2,437.99 (저층부2,872.8)	58.66 (저층부69.12)	60,392.62	987.42	지상17 /지하6	69.6	업무시설, 근생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1)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

분양대상자		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			비고
성명	주소	토지(㎡)	건물(㎡)	용도	
(주)한국토지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, 코레이타워 16층	3,146.8	45,723.15	업무시설, 근생시설	
중화민국	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6층	446.49	6,487.48	근생시설	

2) 체비지 시설 : 토지 554.11㎡, 건물 8,051.28㎡

3) 보류지 시설 : 토지 9.0㎡, 건물 130.71㎡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설					용도폐지				
종류	명칭	규모(㎡)	설치비용(원)	관리청	종류	명칭	규모	국공유지	무상양여
도로	중로3-1	14.10	469,735,705	서울특별시	-	-	-	-	-
도로	소로3-a	8.80	313,848,383	서울특별시					
도로	소로1-b	50.10	1,601,410,909	중구					
공원	역사공원(공원1)	664.50	22,615,232,586	서울특별시					
공원	역사공원(공원2)	99.10	2,769,612,067	중구					
계		836.6	시행자부담						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

6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(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☎02-3396-5774)